

##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11
----------	------

제출년월일 : 2011년 4월 일  
제출자 : 제천시 장

### 1. 제안이유

- 제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변보호
- 신고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 3. 주요내용

- 부조리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내지 제6조)
  - 신고기한, 신고방법, 신고의 처리 등
- 조사결과의 처리 (안 제7조)
  -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감사 결과의 통지
-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분 보장 (안 제8조내지 제10조)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 신분공개 제한 및 공개자에 대한 제재
  -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 배제 및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
  - 보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조사와 보복행위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제재
- 보상금 지급 (안 제13조내지 제15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1건당 상한액은 1천만원)
  - 보상금 지급제외 사항 규정
  - 보상금 환수에 관한사항 규정

### 3. 의안전문 : 붙임

### 4. 기타참고 사항

- 가. 입법예고기간 : 2011.3.7 ~ 2011.3.28(21일간)
- 나. 2011년도 제5회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 원안가결

### 5. 관계법령 : 붙임

- 첨 부 1. 의안전문 1부  
          2. 관련법령 1부  
          3.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이하 “부조리”라 한다)”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라.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3.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부조리의 신고)** 누구든지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신고 기한)**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신고 방법)** 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방문,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신고 경위 및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 시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와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이나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협조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감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7조(조사결과의 처리)**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를 감사·조사 종료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 할 수 있다.

④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와 그 밖의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그 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복 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 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허위신고)** 신고자가 거짓내용을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3조(보상금 지급)** 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② 보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지급액은 제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이 경우 상한액은 1건당 1천만원으로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면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가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수사·조사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4.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7. 그 밖에 보상금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보상금 환수)** ①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의 환수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유형(지급대상)	지급 기준(액)
제2조제2호가목 관련 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품 수수(授受)액의 50배 이내</li> <li>○ 개인별 향응액의 50배 이내</li> </ul> <p>※ 한도액 : 1건당 1천만원 이하</p>
제2조제2호나목 관련 신고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징 또는 환수 등 결정액의 20퍼센트 이내</li> </ul>
제2조제2호다목 관련 신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선 • 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공된 금품액의 50배 이내</li> </ul> <p>※ 한도액 : 1건당 1천만원 이하</p>
제2조제2호라목 관련 신고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50배 이내</li> </ul> <p>※ 한도액 : 1건당 1천만원 이하</p>

※ 같은 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로 지급한다.

[별지 서식]

접수일	
접수번호	

##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타 자치단체조례 】

###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2007-06-22 조례 제 3632호

(전문개정) 2008-07-04 조례 제 3759호

(일부개정) 2009-12-31 조례 제 39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 시·군 소속 공무원과 도, 시·군이 설립한 법인 및 도, 시·군이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 소속 공무원과 도, 시·군이 설립한 법인 및 도, 시·군이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도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09.12.31.>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라.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5조(신고의 방법)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도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도가 지정하는 도 지역 정보 통신망인 경기넷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에 등록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에 부조리 행위에 대한 내용을 제보자가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에 신고할 때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는 함께 기재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가 지정 운영하는 도 지역 정보 통신망인 경기넷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도지사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기도 포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공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별표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한다. [신설 2009.12.31.]

③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이 헉위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에 따라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7.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09.12.31.]

제10조(환수) 도지사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보상금의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9.12.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된 보상금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과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 2007-06-22 조례 제990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무원 등"이라 함은 과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과천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제3조에 따른 상근인력,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2."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4."보상금"이라 함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3.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4.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 제4조(신고 기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징계시효 만료일 3월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 방법)

-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자의 보호)

-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신고를 처리하는 사람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공무원 등이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조력한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

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하며 이러한 심사결정은 과천시인사위원회가 대행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규모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2항의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여부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부조리 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④제1항에 따른 심사 결정시 관련 공무원 등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보상금의 지급)

①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하되, 계좌 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시장은 보상금 지급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5.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형사상 또는 행·재정상의 벌을 면 탈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
6. 신고내용 외에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수수 사항
7. 언론인·수사기관·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8.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환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보상금 수령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공고 제2011 - 310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의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3. 07.

### 제 천 시 장

##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조례명 :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 2. 제정이유

- 제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
- 신고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누구든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제천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안 제3조)
-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함(안 제4조)
-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 및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별지신고서에 의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조사 또는 감사실시 및 신고한 사람으로부터 신고사항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결과의 통지.(안 제7조)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 신분공개 제한 및 공개자에 대한 제제와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공무원의 신고자의 신분 파악을 제한함(안 제8조)
-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 배제 보장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안 제9조)

- 신고자의 보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조사와 보복행위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제재  
(안 제10조)
- 신고내용이 거짓이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
- 신고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대상자 선정과 지급액은 제천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며, 1건당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함.(안 제13조)
- 보상금 지급제외 (안 제14조)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곤란한 사항
  - 이미 신고가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수사·조사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언론보조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 보상금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3월 28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연락처

043-641-5530 ~ 5534(감사팀), FAX 043-641-5499 담당자 : 이 준희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사항 등

★감사팀장	기획감사담당관				
총회표	04/04 함건택				
실무관	이준희				

##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에 대한 공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공고 제2011-310호
3. 공고기간 : 2011.2.17 ~ 3.28(21일간)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따로붙임
6. 공고결과
  - 조회수 : 71명
  - 의견제시자 : 없음

붙임 : 공고안1부.(별지), 마침.